

WTO 가입과 관련 경제체제 변화 가속

중국의 WTO 가입이 목전에 다다랐다. 이는 중국이 더욱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도록 모든 법률체제와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커다란 전환점에 임박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1993년¹⁾부터 이다. 그 동안 과거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경제체질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이러한 노력은 WTO 회원국과의 쌍무협상을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는바, 1999년 11월 미국, 2000년 5월 EU와의 WTO 가입을 위한 합의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거대 중국 시장을 확보해야만 하는 우리로서는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체질 변화를 파악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가격파괴 현상 갈수록 심화

첫째, 가격파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컬러 TV, 에어컨, 세탁기, 온수기, 전자레인지 등의 가전제품에서 심하다. 최근에 가격 파괴 바람은 자동차, 의약품, 이동전화기, 건축자재, 부동산, 의류, 극장표 등의 모든 품목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과거에 공급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과잉 중복투자를 묵인 내지 방치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컬러 TV를 예로 들면, 현재 중국의 연간 판매량이 3,000만 대 수준인데 생산능력은 4,000만 대가 넘는다. 때문에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가격인하 경쟁을 하고 있다. 29인치 컬러 TV가 대당 최저 1,680위안(25만 원 수준)에 판매되고 있다. 가격인하 경쟁을 통해 경쟁 기업을 퇴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 대부분이 국유기업인데다 지방정부의 암묵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단순한 가격 경쟁으로 경쟁 기업이 퇴출될 가능성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가격 파괴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1) 1992년 10월 중국 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 경제개혁의 목표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건설'에 있음을 확정하고, 이듬해 3월 개최된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함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함.

보다는 경쟁기업과의 기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형국, 즉, 어느 기업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냐로 바뀌었다. 이러한 가격파괴 경쟁 여파로 지난해 중국의 컬러 TV 업계 전체가 적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독점체제가 점차 붕괴되고 있다. 이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유기업의 특정산업에 대한 독점체제에서 점차 경쟁체제로 전환해나간다는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통신산업이다. 중국의 통신산업은 中國電信公司가 독점 해왔으나, 지난해 4월 中國電信·中國聯通·中國移通·中國衛星 및 中國網通의 경쟁체제로 전환되었다. 과거 국가가 독점했던 산업 부문을 점차 경쟁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민간부문의 참여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경쟁을 통한 기업의 시장집중도를 제고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철도·항공·전력·석유화학·자동차·야금 등의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경쟁체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소유제에 의한 진입제한을 더 이상 두지 않을 전망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 할거 및 담합 행위 등의 금지를 강화하고 있다. 지역 할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자동차를 들 수 있다. 후베이省(湖北)에는 승용차를 생산하는 동풍(東風)이라는 합작 자동차 회사가 있다. 후베이성은 동풍 자동차의 판매 보장을 위해 자동차 판매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상하이(上海)의 다중(大衆: 독일의 폭스바겐과의 합작회사)社가 생산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중앙정부에서 규정하는 각종 세금 외에 대당 7만 위안(1,050만 원 상당)의 부실기업 회생 특별기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뒤질세라 上海市는 각종 세금 외에 별도로 대당 8만 위안(1,200만 원 상당)을 자동차 번호판세라는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가격 담합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가격 담합의 경우는 컬러 TV, 비행기표 등의 품목에서 가격 파괴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독점금지법’(反壟斷法)을 제정하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소비대출 확대에 총력

셋째, 소비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은행의 소비대출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수요 위축에 대한 대응 및 19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급제도의 개선 등과 맞물려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은행들이 주로 취급하고 있는 소비대출로는 주택·자동차·컴퓨터 등의 소비제품 구입자금과 교육자금

대출 등이 있다. 그러나 소비대출제도가 아직 정착화되지 않은 관계로 대출 규모는 2000년 6월 말 현재로 약 2,500억 위안(300억 달러)으로 전체 대출총액의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의 은행들은 소비자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데 익숙해 있지 않았고, 소비자들도 이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은행은 정부의 요구에 따라 기업에게만 자금을 제공하여 왔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려 할 경우, ① 소득 증명, ② 구입 대상 주택의 평가보고, ③ 법률의견서, ④ 재직기관의 증명 등의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보험가입과 계약서 공증도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등을 수차례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은 둘째치고 대출관련 부대비용이 대출금의 10% 수준에 달한다. 소비대출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소비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또한 과거 체제의 영향으로 의식전환이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최근에 정부 등 금융기관이 '미래의 수익으로 오늘을 풍요롭게'라는 구호를 자주 사용하고 있지만 카드 가맹점이 적은 등 제도상의 미비와 이에 상응한 소비자들의 의식전환이 뒤따르지 않아 소비대출은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물자 시장수급에 따라 가격 결정

넷째, 국내 유통가격을 국제 시장가격 수준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석유류 제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1999년 4월부터 OPEC의 감산 조치에 따라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한때는 배럴당 35달러를 넘기도 하였다. 중국은 1993년부터 원유의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여 지난해 한 해만 해도 원유와 석유류 제품의 수입이 6,000만 톤에 달하였다. 중국은 1998년에 제정한 '원유와 석유류 제품 가격개혁 방안'(原油與成品油價格改革方案)을 통해서 원유와 석유류 제품에 대한 정부 가격 고시제도를 실시하였다. 중국 정부는 매월 1회씩 발표하는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중국의 양대 석유 생산회사인 중국석유화학공사와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가 상하 5% 범위 내에서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로 1999년 11월부터 시작하여 일곱 차례나 휘발유가격이 인상되어 톤 당 인상전에 2,797 위안(약 340달러)이었던 것이 최고 4,160위안(약 500달러)까지 50% 가까이 상승하였다.

다섯째, 기업경영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국내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전업계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중국 가전업계를 대표하는 퇴임

대표이사의 현재 나이가 하이얼(海爾) 51세, 련상(聯想) 56세, 창홍(長虹) 56세, 그리고 하이신(海信) 43세이다. 한창 일할 나이에도 불구하고 꽤 넘치는 30대 후반의 젊은이들에게 대표이사직을 이양한 것이다. 물론 이들이 완전 퇴임한 것이 아니고 ‘총재’ 등의 명의를 갖고 있기는 하나 실제 업무는 대표이사가 총괄하고 있다. 가전업계의 연소화 현상은 국내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단순 가격 경쟁으로 전락함에 따라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퇴임한 대표이사들은 연령상으로 대학을 진학할 시기에 문화혁명(1966-1976)을 거친 세대들로서 당시 농촌과 변방으로 끌려갔던(下放)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혁개방 이후에 교육을 받은 개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신세대의 젊은이들로 교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꽤 넘치는 젊은 세대로의 기업 최고경영자 교체가 성공을 거두지는 아직은 미지수이지만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장 나타나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덤핑 피제소에 적극적으로 대응

여섯째, 외국에 대한 반덤핑을 적극적으로 제소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외국의 반덤핑 피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997년 3월 중국은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례’(中華人民共和國反傾銷和反補助金條例)를 제정·공포하였다. 동 법이 공포되자마자 캐나다·미국·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신문용지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하였다. 1999년 6월 이 건에 대해 5년 기간 동안 9~5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동 법률 제정 이후 신문용지에 대한 덤핑 조사에 이어 폴리에스테르 필름·냉연강판·염화메탄 등 지금까지 총 6건에 대한 덤핑 조사²⁾를 실시하여 4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다. 지금까지 제소된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일본·캐나다·러시아·독일·영국·프랑스·네덜란드 등 국가들이다. 이와는 달리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래로 400여건의 덤핑 조사를 받았으며, 1996년부터는 세계 제1의 덤핑 피소국이 되었다. 중국기업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피소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하지 않은 경우가 피소 건의 1/3에 달하였다. 실례로 1994년 미국으로부터 마늘에 대한 반덤핑 피소를 받고 이에 대해

2) 6건 중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4건(신문용지, 폴리에스테르 필름, 냉연강판, 염화메탄)으로 가장 많고, 이 중에서 염화메탄을 제외한 3건은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었으며, 지난해 12월 제소된 염화메탄은 조사가 진행중임.

단 하나의 기업도 대응을 하지 않아 무려 376.7%의 반덤핑 관세를 판결받았다. 중국이 덤핑 피소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은 정보 부재와 기업의 대응능력 부족 외에도 제조국이 아닌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 등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덤핑 피소에 대응하고 있다. 1988년 중국은 EU로부터 컬러 TV 덤핑을 제조당한 바 있다. 당시에는 중국의 단 1개 기업도 이에 대응하지 않아 1998년까지 44.6%의 반덤핑 관세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중국은 EU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반덤핑 관세부과 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중국은 수출을 재개하였고, 다시 피소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1999년 4월 당시 EU에 연간 40만 대를 수출하던 샤화(厦華)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데 이어 기타 가전업체들도 가세하여 지금은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철강업체들이 공동으로 미국의 덤핑 제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기업들의 태도 변화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과 대응능력이 향상된 한편, 글로벌화가 더욱 진전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국내 시장만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일곱째, 법률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들 수 있는 것이 지난해 10월 말에 수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에 부과했던 수출 의무·외환수지 균형 유지·국내 제품 우선 구매 등의 조항을 폐지하였다. 또한 민간기업에도 대외무역권을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대외경제 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보듯 향후에는 더 이상 소유제에 따른 차별적인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진입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외화 금리 자유화, 내수시장의 점진적 개방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진출시 산업정책 등 고려해야

중국의 WTO 가입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자국 경제체제를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이 확대될수록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경쟁체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경제체제의 변화 추세가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중국의 변화되는 경제환경 속에서 쉽게 정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유기업 지분 인수 또는 투자를 통한 중국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지분 인수 등의 방식을 통한 중국 진출과 관련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앙정부 및 당해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다. 즉, 인수대상의 기존 국유기업이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에 관한 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定規定)과 ‘외국인 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에서 정한 장려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장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지분 취득 허용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인가기관과 인가권한에 관한 사항이다. 법률에서 정한 당해사업의 인가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함으로써 지방이나 특정기관이 지방이나 특정기관의 이익을 고려하여 월권 또는 위법으로 인가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토지사용권의 귀속 여부 및 토지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내용이다. 중국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토지사용권을 사용하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인수할 경우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것인지 아니면 임대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비영리성 자산에 대한 처리 문제다. 국유기업의 경우 대부분 기업 산하에 병원·식당·탁아소·학교 등의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기업의 재산권, 업무상의 계약이나 협약, 해외투자 등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金周永】